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결 정 문

사건번호: KR-1900197

신 청 인: (주)셀트리온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변리사 김정식, 변리사 고혜리)

피신청인: bk.yoo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주)셀트리온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3 (송도동)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자 : 변리사 김정식, 변리사 고혜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청진동, 디타워 디2)

피신청인: bk.yoo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8길 48, 2층 (구의동)

분쟁 도메인이름은 "celltriontour.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가비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B동 4층 (삼평동)) 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9. 3. 19.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 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9. 3. 21.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9. 3. 21.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9. 3. 21.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9. 4. 10.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9. 4. 10.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9. 4. 11.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정찬모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2019. 4. 11.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9. 4. 12.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2018. 1. 18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인 "celltriontour.com"을 등록한 자임이 후이즈 등록정보상 확인되며, 신청인 (주)셀트리온은 일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요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2002년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 업체인 바 이 사건 분쟁신청의 정당한 당사자임이 증거에 의해 확인된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 "celltriontour.com"은 자신의 등록 상표이자 선사용상표인 "celltrion"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피신청인은 셀트리온 그룹과 무관한 자로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어떠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 상표의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신에게 이전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피신청인이 등록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 "celltriontour.com"

중에서 최상위도메인 식별자인 ".com"을 제외한 "celltriontour"는

“celltrion”과 “tour”를 결합한 것이 명확한데 “tour”는 여행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을 갖고 있는 주된 부분은 “celltrion”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신청인의 선사용상표와 동일한 바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셀트리온 그룹과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는 자이며 그가 “셀트리온투어” 표장에 대해 출원한 상표등록출원 제40-2018-12555호가 특허청에 의해 수요자 기만염려 및 모방출원을 이유로 등록거절된 사정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2018. 1. 18. 당시 신청인은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갑 제6호증 내지 제16호증), “celltrion” 표장이 일상 용어와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어서 우연히 동일한 이름을 등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피신청인의 웹사이트가 신청인의 로고와 유사한 형태의 로고를 사용하

고 있는 등의 사정에서 미루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celltriontour.com>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1인 행정패널

정찬모

결정일: 2019년 4월 23일